

11.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재정경제부공고 제1998-106호 1998. 7. 11

주요내용

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
와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노후시설
개체투자·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
설비투자 및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

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
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
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, 제조업의 설
비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
려는 것임.

주택회보